2022. 3. 24.(목) 10:00

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

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도 시 환 경 위 원 회

(수석전문위원 신 성 해)

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1일 양철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

1. 제안이유

○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대상을 확대하고,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에 건축·방재를 포함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○ 당연직 위원을 관련 업무 담당 실·국의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를 확대함(안 제4조제2항)

3. 검토의견

○ 「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

○ 안 제4조제2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기존의 지역정책과장, 도시정책과장, 주택정책과장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정한 것은 향후 조직 개편 및 업무분장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,

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건축·방재 분야를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공공지

원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및 공급촉진지구 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 등의 과정에서 건축구조, 건축환경 등의 건축 분야와 화재, 붕괴 등의 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

❍ 이번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 구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촉직 위원의 전문분야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